

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(제41조의2제1항 관련)

1. 교육과정별 교육시간

(단위: 시간)

교육과정	기본양성과정	간이양성과정	전문과정	보수교육
가. 해설안내	25	11	49	8
나. 자연환경의 이해	39	13	21	6
다. 인문사회환경의 이해	11	7	19	2
라. 커뮤니케이션	5	4	11	8
마. 합계	80	35	100	24

2. 비교

- 가. 기본양성과정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.
- 나. 간이양성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환경해설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(연간 80시간 이상)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.
 - 1)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
 - 2)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
 - 3)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
- 다.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·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교육과정을 말한다.
- 라. 보수교육은 자연환경해설사의 기본양성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.